

|   |   |
|---|---|
| <p>앞으나, 1994.1.7 위 法律과 1994.4.7 同法施行令이 制定되었으므로, 民願審議 委員會의 機能이나 構成을 上位 準據 法令의 内容대로 改正하는 것은 條例 立法體系上妥當한 것으로 보아지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의 改正으로 本 條例上 幹事와 書記의 職位를 改 正된 職位로 變更調整하는 것은 合理 的인 改正案으로 料됩니다.</li> </ul> <p>다음은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運營 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報告)</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委員會 回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 서울特別市長(95.5.2)</li> <li>나. 回附日字 : 95.5.3</li> <li>다. 上程日字 : 第77回 臨時會 第1次 内務委員會(95.5.11)</li> </ol> </li> <li>2. 提案說明의 要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提案理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市所屬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任用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어, 委員은 擔當職位보다 道德性·清廉性 等 個人的 ability基準에 依해 任命하는 任命趣旨에 反할 뿐 아니라, 特別한 缺格事由가 없음에도 市의 轉補人事時 다시 任免하거나 再任命해야 하는 等의 不合理한 點이 있어 이를改善하고,</li> <li>○ '94.12.31 公職者倫理法改正(法律 第4853號)時一部 條文이 變更되어 條例上의 關聯條項을一致시키고자 하려는 것임.</li> </ul> </li> <li>나. 主要骨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의 任期中 所屬公務員인 境遇,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을 “任命當時의 職級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調整(案 第4條第2項)</li> </ul> </li> </ol> </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職者倫理法 改正에 따른 條例上의 關聯條文 一致 : 6個條<br/>(案 第3條第1項第2號, 第6條第2項第1號,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2條 및 第13條)</li> </ul> <p>다. 參考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關係法令 : 公職者倫理法</li> <li>○ 豈算措置 : 別途措置 必要 없음.</li> <li>○ 合意 : 必要 없음.</li> </ul> <p>3. 檢討意見</p> <p>가. 現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行條例는 1993.9.6 條例 第3021號로 制定 18個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第1條 目的에는 公職者倫理法 第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한 事項과 公職者倫理法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여 條例制定 根據와 趣旨를 밝히고 있으며, 그 主要內容으로는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機能,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會會議, 財產登錄의 審查報告, 移送, 資料提出 등을 規定하여 現在 運營中에 있습니다.</li> </ul> <p>나. 運營上의 問題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9.6 制定된 現行條例는 現在까지 運營하면서, 同條例 第2條(構成) 第1項의 規定에 依하면 9人의 委員 中 5人은法官, 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者 中 市議會議長과 協議委嘱하고, 4人은 市議員 2名과 1級以上인 서울特別市所屬 公務員 2名으로 構成되며 規定하고 있으며,</li> <li>○ 同條例 第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第1項은 모든 委員의 任期를 2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하면서 第2項에는 市所屬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前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어 公務員 身分으</li> </ul> |
|---|---|

|  |   |
|--|---|
| <p>로appointment되는境遇,倫理委員의適任與否는委員individual의道德性·清廉性·责任感·職務遂行 ability等individual的能力을基準으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appointment当时職位에in職中인期间으로제한하고있음은appointment趣旨에도맞지않을뿐아니라特别한缺格事由가없음에도市의轉補人事時다시appointment하거나再appointment하여야하는번거러움과不合理한problem point이나타나고있습니다.</p>                      | <p>理的인改正案으로思料됩니다.<br/>.....</p> <p>이상檢討report를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朴禧柱수고하였습니다.</p> <p>이어서一括上程된two案件에대한委員님들의質疑와執行部側의答辯을듣도록하겠습니다.</p> <p>質疑할委員계시면質疑해주십시오.</p> <p>白中元委員,質疑하십시오.</p> <p>○白中元委員白中元委員입니다.</p>   |
| <p>다.公職者倫理法의改正</p> <p>○1994.12.31法律第4853號로公職者倫理法이改正되어同法第8條(登録事項의審查)는改正前에는登録財產을審查하기爲한11個項目을規定하였으나,今般改正으로金融財產에對한實質的效率的審查를爲하여全登録義務者에對하여金融機關의長에게金融去來資料의提出要求條項을新設하여12個項目이되었으므로,現行條例의準用法律인上位根據法令인公職者倫理法의改正에따라準用關聯條項을改正하려는것입니다.</p>   | <p>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構成관계에관해서우리委員長님께한가지묻겠습니다.여기構成에보면委員長그다음에副委員長에서서울市議會議員이한분構成되어있는데.....</p> <p>(「두분.....」하는關係公務員있음)</p> <p>두분中에副委員長한분,委員한분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公職者倫理委員會는마땅히所管業務로보나이것이內務委員會에서우리委員이여기에參與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副委員長도그리고,委員한분도그리고內務委員會에서는한분도여기에추천이안됐어요.그래서뭔가좀잘못된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次期부터는반드시內務委員會에서우리內務委員會委員長이이構成에參與하도록이렇게좀參考를해야되겠습니다.</p> |
| <p>라.結語</p> <p>○本條例改正案은現行條例上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委員構成에있어서內部委員4人中서울特別市議員2名을除外한서울特別市所屬公務員2名의委員에對한任期는任命當時의職位에in職中인期間으로하고있기때문에倫理委員의適任與否는公職者individual의道德性·清廉性·责任感·職務遂行ability等을任命基準으로考慮하여야하는趣旨에도어긋날뿐아니라特别한缺格事由가없음에도市의轉補時에는다시任免하거나再任命하여야하는不合理한問題point을改善하여任命當時의職級으로改正하려는것이고,</p> | <p>이상입니다.</p> <p>○委員長朴禧柱李永和委員,말씀해주십시오.</p> <p>○李永和委員이것을합리적으로하자면앞으로倫理特別委員會가존속이될것아닙니까?倫理特別委員會가저쪽에가서副委員長을하고內務委員1名은平委員으로추천을하고,그것이가장합리적인것이에요.그런데지금財經委員長이들어가있잖아요?또한사람은누구이에요?</p>  |
| <p>○本條例의上位根據法令인公職者倫理法의改正으로條例關聯準據條項을改正하는것은條例立法의體系上合</p>   | <p>○監查室長李相鎮康明秀議員입니다.</p> <p>○李永和委員明文에이것을넣어요.그래야기률을잡는거예요.</p> <p>○權寧斌委員그런데여기지금公務員들만</p>  |